

#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09
------	------

2021. 2. 25.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2월 5일, 김재형 의원

나. 회부일자 : 2021년 2월 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1. 2. 25.)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재형 의원)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 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기경보지수가 포함된 조기경보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경제상황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제정안의 개요

- 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서울 경제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됨.

#### 나. 조례 제정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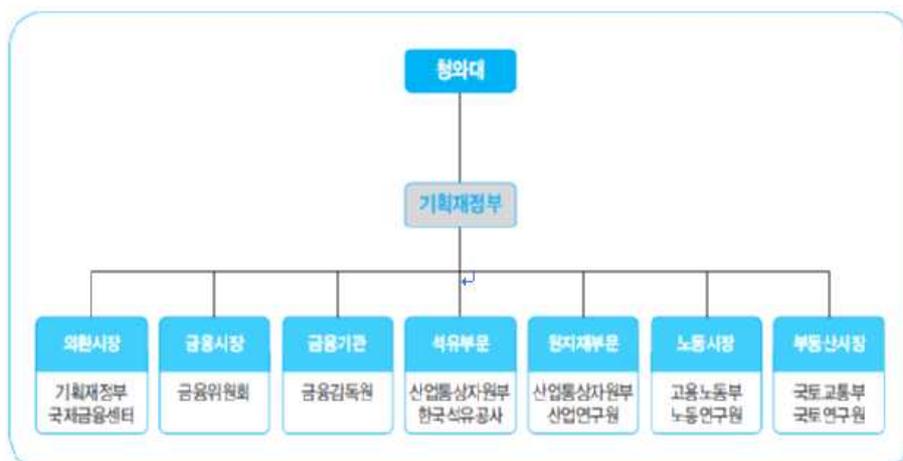
- 코로나19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서울시의 고용과 소비 등 경제 전반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2020년 기준 서울의 취업자는 전년대비 3만 5천명이 감소하면서 고용 충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파산건수도 9개월(3~11월)간 총 8,554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2.9%(977건) 증가함<sup>1)</sup>.
  - 주요 산업인 의류(△19.3%), 가죽·신발(△40.5%), 인쇄(△7.3%) 분야 등에서 경기침체와 수요 부진 등으로 생산 감소가 지속되고 있음(서울 경제동향 2020.12).

---

1) 서울 회생법원에 접수된 파산건수는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3월 이후 11월 까지 개인 파산 8,199건(13.2%↑), 법인파산 355건(5.7%↑) 으로 7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 하였음(대법원 통계월보).

- 또한 외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92%(△1,376만명) 감소한 약 118만명(2월~11월)이 내방하였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동대문, 종로 등의 피해가 컸음.
- 경기 상황지표인 소비경기지수도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코로나19 등과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은 위기 전파 속도가 빠르고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경제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경험 이후 국가 조기경보시스템(2005년)을 구축하여, 현재 총 7개 부문(외환시장, 금융시장, 금융기관, 석유, 원자재, 노동시장, 부동산시장)별로 경제위기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위기관리체계를 운영 중임.

### <정부 조기경보시스템 체계도>



-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충청남도가 2017년 최초로 경제위기대응 시스템의 구축·운영, 대응매뉴얼의 작성, 경제상황점검회의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고, 전라남도, 제주도 등으로 확산되고 있음(참고자료1).
- 서울시는 현재 자체적으로 각종 경제지표(월별)를 수집·분석하고, 서울연구원을 통해 소비경기지수·종합경기지수 등을 개발해 경제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음2).
- 지난해 2월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기업·소상공인·관광 등의 분야별 피해 극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상설 기구인 ‘민생경제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임.
- 그동안 서울시는 경제위기 상황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 ‘민생경제대책반’ 등의 비상설 기구를 구성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상시적인 대응 조직이나 대책 등은 없는 실정임(참고자료2).
- 따라서 코로나19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 마련과 함께 효과적인 정책 실현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2) 서울경제 모니터링 용역 : 서울시의 소비경기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를 개발하고, 창업, 고용동향 등 경제동향을 분석하는 용역이며 올해부터 서울연구원 자체연구과제로 전환 운영 중임(2021년도 2억 2천만원).

## 다. 조문별 검토

### (1) 경제위기 등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2조·안 제3조)

- 안 제2조는 제정안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경제위기’,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조기경보지수’, ‘모니터링’ 을 각각 정의하고 있음.

#### <용어 정의 비교>

용어	조례안 정의	사전적 정의
경제위기	생산, 고용 등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상황	생산·분배·소비의 순환으로 이루어지는 부의 사회적 재생산 과정이 균형을 잃은 위험한 고비나 시기
경제위기 대응시스템	경제위기 징후를 진단·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인적·물적 체계	없음
조기경보지수	경제위기를 계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경제지표를 종합·분석하여 산출한 지수	각각의 변수를 고려해 위기 상황을 사전에 경보하는 지수
모니터링	조기경보지수 외의 정량적·정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상황을 조사·분석 및 진단하는 것	방송국이나 신문사 또는 기업체로부터 의뢰를 받고 방송 프로그램이나 신문 기사 또는 제품 따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일

- ‘경제위기’ 는 아직 법적·제도적으로 개념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조례의 구속력과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여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안 제3조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단계별 경제위기 대응 정책 강구, ▶필요 조직과 예산확보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준비와 대응 관리 등의 시장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제대응 정책을 차질없이 수립·시행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판단됨.

## (2) 시스템 구축·운영과 대응매뉴얼 작성 등(안 제5조·안 제6조)

- 안 제5조는 경제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경제위기대응시스템에는 ▶조기경보지수가 포함된 조기경보시스템,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경제위기 단계별 대응매뉴얼과 대응시책, ▶경제상황점검위원회 운영 등이 포함됨.
  - 또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을 위해 ▶경제 관련 지역 통계의 생산·수집, ▶경제상황에 대한 정기적 분석과 진단, ▶네트워크 구축, ▶경제상황점검위원회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고, 그 업무를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서울시는 그동안 주요 경제지표 개발이나 경제동향 분석에 대한 모니터링을 서울연구원 등을 통해 추진해오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관 간 역할분담과 협업이 요구됨.
- 안 제6조는 경제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위기 대응매뉴얼을 작성·배포, 보완·정비하고, 대응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응매뉴얼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이는 관계법령이 미흡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의 제도적 틀을 마련해 정책 시행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 판단됨.

### (3)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안 제7조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과 효율적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조사와 연구,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효율적인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촘촘한 대응시스템의 설계와 객관적인 정책평가, 면밀한 대응역량 분석 등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 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4)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8조~안 제13조)

-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는 경제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상황점검위원회’를 두고, ▶경제상황의 점검과 판단, ▶경제위기 상황 등의 공개와 대응, ▶경제위기대응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을 점검하고 협의하도록 하였음.

- 위원회는 위원장(시장), 부위원장(행정 1부시장) 등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는 반기별 1회씩 개최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10조), 위원회 수당(안 제13조)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위원회 운영의 일반적인 규정을 준용함.
- 서울의 경제상황 점검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신설하는 위원회가 기존 서울의 산업·경제정책에 대한 통합 자문기구인 희망경제 위원회 업무와 기능상에서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양 위원회 간에 명확한 기능 분장이 필요함.
- 한편, 안 제12조는 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해 ‘실무 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을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sup>3)</sup>에서는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 등을 둘 수

---

3)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없도록 하고 있어 ‘실무지원단’의 성격을 비상설로 엄격히 한정해야 할 것임.

제12조(실무지원단) ① 위원회는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분석 등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 라. 종합의견

- 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위기에 대비한 사전 감시와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서울형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적 의미가 있음.
- 또한, 지역경제위기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여 경제위기 시 신속한 선제적 대응시스템을 갖추는 입법·정책적 효과가 있음.
-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분야별 민생경제대책반, 희망경제위원회 등의 기구와의 기능과 역할 중복성 등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2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 안

(김재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209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5일  
발 의 자 : 김재형 의원(1명)  
찬 성 자 : 김기대, 김기덕, 김수규,  
김정태, 김제리, 김종무,  
김평남, 김혜련,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성흠제, 송명화,  
송아량, 양민규, 이광호,  
이상훈, 이영실, 이정인,  
임종국, 전석기, 정진술,  
최 선, 최정순, 한기영,  
황규복 의원(28명)

##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 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기경보지수가 포함된 조기경보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함(안 제 5조).

다. 경제상황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 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위기”란 서울특별시 내 생산, 고용 등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상황을 말한다.
2.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란 경제위기 징후를 진단·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인적·물적 체계를 말한다.
3. “조기경보지수”란 경제위기를 계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경제지표를 종합·분석하여 산출한 지수를 말한다.
4. “모니터링”이란 조기경보지수 외의 정량적·정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상황을 조사·분석 및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내의 경제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실현가능한 정책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경제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제위기의 관리 및 대응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의 각종 정책 수립·시행에 적용한다.

제5조(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1. 조기경보지수가 포함된 조기경보시스템
2.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3. 경제위기에 따른 단계별 대응매뉴얼과 대응시책
4.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의 운영
5. 그 밖에 경제상황의 조기 예측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 및 보완
2. 경제 관련 지역 통계의 생산·수집 관리
3. 경제상황의 정기적인 분석·진단 및 대응방안 제시
4.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5. 경제위기 대응매뉴얼과 대응시책의 마련 및 보완
6.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의 운영 지원

7. 그 밖에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경제위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운영) ① 시장은 경제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단계별 대응조치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경제위기 대응매뉴얼(이하 “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대응매뉴얼을 보완·정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제위기 시 대응매뉴얼에 따른 대응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응매뉴얼의 작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위기 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와 관련

있는 전문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효율적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경제상황점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내의 경제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협의한다.

1. 경제상황의 점검 및 판단
2. 경제위기 상황 등의 공개 및 대응
3.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개선
4.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시, 자치구 및 관련 단체 간 정책조정 및 협력
5. 그 밖에 경제위기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서울특별시 경제 관련 실·본부·국장
3. 서울특별시 내 경제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의 대표 등 지역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협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협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씩 개최하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실무지원단) ① 위원회는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분석 등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1020100000006

## 미참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김재형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여차민 팀장  
박주용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2.01

회신일 : 2021.02.01

내용문의 : 02-2180-7943

###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참부 사유서

####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참부 근거 규정
3. 미참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 제5조(경제위기 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제6조(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운영), 제7조제3항 및 제4항(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경제상황점검위원회 구성 등), 제12조(실무지원단)에 따라 비용 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2,453,000천원(연평균 490,6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490,6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1~2025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제6조의 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운영 및 제7조제3항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와 관련 있는 전문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 의뢰는 제5조(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에서 포함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전제
- 제7조제4항의 효율적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규모,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비용산정이 어려우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 제9조에 따른 경제상황점검위원회는 30명(시장 1명, 행정1부시장 1명, 경제 관련 실·본부·국장 1명, 시의원 5명, 민간위원 22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
- 제12조의 실무지원단은 소관 부서 공무원 및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소속 인력으로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 미발생
- 물가 및 인건비 인상률은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2,453,000천원(연평균 490,6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제5조)	480,000	480,000	480,000	480,000	480,000	2,400,000	
	경제상황점검위원회 운영 (제9조)	10,600	10,600	10,600	10,600	10,600	53,000	
	소계(b)	490,600	490,600	490,600	490,600	490,600	2,453,000	
□ 총 비용(b-a)		490,600	490,600	490,600	490,600	490,600	2,453,000	

-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 연간 비용 480,000천원×5년=2,400,000천원
  - ※ 연간 비용 : 2021년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충남연구원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예산 480,000천원을 적용하여 추계
  - \* 별첨 : [참고자료] 2021년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예산 사업설명서
- 위원회 운영비용 : 참석수당 44,000천원+업무추진경비 9,000천원=53,000천원
  - 참석수당 : 수당단가 200천원×22명×연 2회×5년=44,000천원
    - ※ 참석수당 단가 :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
    - ※ 지급인원 : 위원 30명 중 민간위원 22명만 지급
  - 업무추진경비 : 경비단가 30천원×30명×연 2회×5년=9,000천원
    - ※ 업무추진경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만원 수준으로 적용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조사분석팀장      여차민  
 예 산 분 석 관      박주용

☎ 02-2180-7943

e-mail : pjooyong@seoul.go.kr